

대구지방법원 2019. 12. 18 선고 2019가단1595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11. 27

판결 선고 2019. 12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. 2.27. 접수 제89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가 2003. 2. 26. 원고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1,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,이를

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. 2. 26.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3. 2. 27. 그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이현석

별지